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16
----------	-------

발의연월일 : 2026. 4. 1.

발 의 자 : 이종배 · 이현승 · 권영진  
김미애 · 이인선 · 박충권  
정동만 · 엄태영 · 윤영석  
최보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하는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일명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

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와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를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관할 구역 외의”를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 외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